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 중 호**, 구 인 회**, 홍 석 영***, 구 영 모***, 이 경 상****

I. 서론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함께 불거진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는 생명윤리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생명윤리 관련법의 입법 준비를 시작하였다. 2년 이상의 준비 작업 끝에 2002년 9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고, 1년 이상의 논의와 수정 끝에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로 공포되었다. 인간 복제 및 이종간 착상 금지를 규정한 조항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지만, 법률의 전체 내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윤리 관련 법안으로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생명과학의 발달이 야기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인간 배아의 생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차별 금지 및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를 규제한 것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률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점은 이 법률이 14일 이전의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 복제를 허용한 점이다.¹⁾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의장학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교신저자 : 홍석영. E-mail: hsy@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 2005년 3월 8일 유엔은 총회에서 ‘인간 존엄성 및 인간 생명 보호와 양립 불가능한, 의료 목적의 복제를 포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31일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은 이 법은 헌법의 기본권 즉 배아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평등권, 신체 안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톨릭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간의 초기 생명인 배아의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의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겠다.

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성격 및 구성

1. 성격

생명윤리법 입법 과정에서 이 법을 일반법으로 입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법으로 입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²⁾가 있었다. 정부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안, 김덕규의원 대표발의안³⁾, 참여연대 입법 청원 등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 반면,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안과 과학기술부의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개별법의 성격을 가졌다.

법의 성격에 대한 논의 끝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은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이에 대해 김장한은 규율 대상에 따른 개별법으로의 분화가 불가피하며,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 개정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법체계를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

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인간 복제 금지를 위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였다(찬성 84, 반대 34, 기권 37).

2) 박은정.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 정책. 생명윤리 2003 ; 4(1) : 36-37

3)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는, 진교훈. 현대사회윤리연구. 서울 : 울력, 2003 : 500-506, 박은정. ibid. : 23-36, 김중호, 홍석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문리논총 2004 ; 19 : 24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구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모두 9개장 55개조의 법률안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률의 적용 범위, 책무, 자기결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3장 ‘배아 등의 생성·연구’는 3개 절로 나뉘어 1절에서는 인간 복제 및 이종간 착상 등의 금지를, 2절에서는 인공수정배아의 생성 및 관리,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 관련 조항 등을, 3절에서는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4장 ‘유전자 검사’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서는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유전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제6장 ‘유전자 치료’에서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제8장 ‘보칙’에서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제9장에서는 벌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과 잔여 배아 및 체세포 복제배아의 연구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과 문제점

1. 법률 제정의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과 그 문제점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생명과학은 유전병 극복 및 불치병 퇴치를 위한 의학적 효용성을 가지며,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아 연구로 인한 인간 존엄성 침해, 유전정보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상업화 및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등 윤리적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배아 복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유전자 치료 등 생명과학연구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⁵⁾

4) 김장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분석. 생명윤리 2004 ; 5(1) : 3

5)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제정 추진경과. 국무회의 참고자료. 2003. 10. 7 : 1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을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기여토록 하고, 선진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과학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⁶⁾하는 쪽을 잡았다.

이렇듯 이 법률은 처음부터 생명윤리 확보보다는 생명과학 발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인해 향후 이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 과학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예를 들어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인간 복제 금지의 경우 입법 예고안에서는 별도의 장을 만들고 금지 조항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은 그 내용을 배아 등의 생성·연구의 장의 한 절로 다루면서 인간 복제 금지 행위도 축소하였다(<표 1>).

<표 1> 입법 예고안과 법률의 인간 복제 금지 조항 내용 비교: 인간복제 금지 조항

입법예고안	법률
<p>제3장 인간복제 등 제1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인간 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 태아,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2.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궁에 착상된 배아에 대한 임신을 진행하거나 출산시키는 행위 	<p>제3장 배아 등의 생성·연구 제1절 인간복제등의 금지 제11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p>

2. 법률 입법 과정과 그 문제점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장영달·이상희 의원 등이 ‘생명공학육성법’에 인간 복제 금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

6) Ibid..

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생명윤리안전법’ 제정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생명과학 보건안전 윤리법(안)’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각각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생명과학관련 국민 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을 연구하여, 2002년 1월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과학기술부는 2000년 11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이 위원회는 2001년 5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를 기초로 200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2년 7월 생명윤리 관련 법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결정하고, 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단일 법안을 추진하도록 조정한다. 이 무렵 국내에서 인간 복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입법 작업을 가속화했다.

2002년 9월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03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03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1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년여의 입법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부처간의 경쟁, 생명윤리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 부족,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입법을 서두른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간의 경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장점이 있기도 했으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서로 생명윤리 관련 입법 및 입법 후의 법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자기 부처의 업무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은 2002년 7월에 두드러졌고, 이에 결국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법률 입법과 관련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자 양 부처는 이 업무를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기도 하였다.

둘째, 생명윤리 관련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였다.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였으나, 일부 생명과학계에서 생명윤리의 확보가 생명과학 연구의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이 법 제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과학기술부는 2002년 7월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의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하여 운영했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생명윤리법기본 골격안’을 무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생명윤리 관련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의 부족, 그리고 생명윤리 확보가 생명과학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5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생명윤리 관련법의 입법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시민단체, 생명윤리학계, 종교계 등은 2003년에도 똑같은 경험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논의보다는 우선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법률의 내용이 처음에 입법을 요구한 내용과 상당 부분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생명윤리 관련법을 입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⁷⁾ 그리하여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이틀 앞둔 2003년 12월 29일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었고, 그리하여 법률 통과와 함께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끝내 헌법 소원까지도 제기되었다.

IV.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법률이 구성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다.

1.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목적을 보면, 이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률의 목적이 이렇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의 기본 방향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어긋나지 않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추구였으므로 법률의 목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기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로 여겨진다.

생명과학기술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생명공학육성법’⁸⁾ (1983년 제정)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본래의 입법 요구와 이름에 걸맞게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기본 목적을 두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7)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성명서. 생명윤리법안 법제처 심사 완료 10월 2일 차관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2003. 9. 30; 참여연대. 2003년 정기국회 정책브리핑 자료. 민생·시민권리분야. 생명윤리법 제정. 2003; 구영모. 생명윤리법 국회처리 시급하다. 동아일보. 2003. 12. 16.

8)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6, 7, 8조) 관련 조항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 제6조 1항에 명시된 심의 사항은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기타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많아진 이유는 조속한 법률 입법을 위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뒤로 미룬 결과이다. 그러나 과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의할 내용이 많고 그 문제들이 모두 매우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핵심 쟁점들에 대한 심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점을 고려해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조항(제7조)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16인 이상 21인 이하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 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3.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1/3이상이 정부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으로 구성된다. 2호와 3호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규정하여 7인을 다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심의위원회를 정부 의도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생명과학 육성을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이와 같은 구성은 결국 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을 생명과학 육성 쪽으로 기울게 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 인사의 참여를 지양 또는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조계의 구성원(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법조계 대표자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문 생명윤리학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의과학계와 법학 분야에 비해 전문 생명

윤리학자가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의 생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잔여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검사·유전자은행 및 유전자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전자전문위원회’, 생명윤리교육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특정한 분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설치한 ‘특별전문위원회’ 등 모두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그리고 그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1.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법무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부 또는 법제처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자,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 자, 3.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번 그룹에 속하는 인사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기타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의 동의 절차, 개인 정보 보호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생명과학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에 기관위원회를 두어 윤리 및 안전문제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되,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선 이 경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조항에서 ‘9인 이하’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대 인원의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이다. 실제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기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간단히 '5인 이상'으로만 기술하면,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 외 종사자'라는 표현도 막연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처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에 종사하는 자'로 분명히 함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기관위원회의 구성 인원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종사자와 해당 기관 외 인사의 수를 각각 1인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의 2/5이상으로 한다'와 같이 비율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인간 복제 금지와 관련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생명윤리 관련법의 입법이 요구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꼽을 수 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포유류에서의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 일부 연구진이 국내에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인간 복제 금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법은 제11조에서 인간 복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입법 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금지 행위가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이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이 착상된 배아에 대해 임신을 진행하거나 출산시키는 행위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었으나, 법에서는 단지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는 행위'와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만으로 축소되었다(<표1>참조). 결국 체세포 복제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금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배아를 만드는 행위가 이미 인간 복제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법의 인간 복제 금지 조항은 미흡하다. '인간복제 금지 협약'을 준비하던 유엔은 최근(2005년 3월 8일) 총회에서 '인간 존엄성 및 인간 생명 보호와 양립 불가능한, 의료 목적의 복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인간 복제 금지를 위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결정을 수용하여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이종간 착상 등의 금지와 관련한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 제12조에서는 이종간 착상을 금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3항(누구든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은 쓸모없는 내용이다. 2항의 금지된 행위로부터 생성된 배아의 착상 금지를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다. 2항의 행위들이 이미 금지되어 있으므로 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또 하나 2항의 금지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행위는 법 제1장 제2조 4항의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정의(체세포 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가운데 허용되고 있다. 결국 동물 난자를 이용한 인간의 체세포 복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체세포 핵이식 과정에서 인간의 난자가 부족하거나 구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동물의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실질적인 이종간 교잡⁹⁾으로 인간 종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체세포 핵이식행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

6. 인공수정 배아와 관련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3장 제2절에서는 인공수정배아의 생성과 잔여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 관점에서 볼 때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배아의 정의와 관련하여

먼저 배아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법에서는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제2조 2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2002년 9월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배아란 수정 또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지고 이로부터 분열된 세포군으로서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라는 정의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아를 간단히 ‘세포군’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의는 배아의 지위와

9) 참여연대. *ibid.*: 10.

관련하여 매우 일방적인 정의이다. 이 정의는 발생학에 따른 순수 과학적 정의일 수는 있지만, 이 법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못한 정의이다. 인간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군’이 아니라 ‘인간의 초기 생명’이다.¹⁰⁾ 그 배아가 태아가 되고 신생아가 되고 소년 소녀가 되는 것이다. 배아는 향후의 인간 생명과 무관한 단순한 세포군이 아니라, 향후의 인간 개체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의 인간 개체와 연속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초기 생명이다. 따라서 이 정의는 배아를 인간의 초기 생명으로 인정하는 정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순수 과학적 의미에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 의미에서의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5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¹¹⁾ 따라서 배아를 앞으로 발생할 인간 개체와 무관하게 순수 발생학적으로 ‘세포군’으로 정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정의는 앞으로 발생할 인간 개체와의 연관 속에서 재정의 되어야 한다.

2) 배아 생성과 관련하여

법 제3장 제2절의 몇몇 조항들은 그동안 관련 법률 없이 이루어지던 인공 수태 시술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특히 인공 수태 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제14조)는 내용과 그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을 명시(제14조와 시행규칙 제4조)한 점,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 성 선택, 사망한자·미성년자 등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 정자 또는 난자 매매 등을 금지한 점 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규정이 요구된다. 특히 임신 목적으로 생성된 배아가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연구용으로 쓰일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의 경우 생성하는 배아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배아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임신 목적의 배아를 가능한 한 많이 생성하여 잔여 배아의 수를 늘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임신 외 목적으로 잔여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에서는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동의권자는 정자 제공자,

10) 홍석영. 생명윤리와 인간학.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4 ; 7(2) : 227-228

1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며, 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이고, 동의 사항은 배아 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배아의 보존 기관 및 배아 보관에 관한 사항,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 임신 외 목적으로 잔여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의 철회,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임신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임신 외 목적으로 잔여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가이다. ‘임신 목적으로’ 생성한 배아를 ‘임신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동의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연구진은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한다면 하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잔여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를 배아 생성 시가 아니라 ‘착상 성공 또는 출산 후’, 아니면 ‘배아의 보존 기간이 종료되어 연구에 이용하려고 할 때’로 늦추어야 한다.

4) 배아의 보존 기간 및 폐기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에서는 배아의 보존 기관과 폐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아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동의권자가 보존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배아 연구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동의권자가 연구를 위해 배아의 보존 기간을 매우 짧게 정한 후 이 배아를 연구에 사용하게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 제17조에서 보존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 배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 동의 절차가 얼마나 엄격히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든다. 차라리 보존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배아는 연구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정신에 더욱 부합되리라 생각한다.

5) 잔여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에서는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보존 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불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배아는 수정과 동시에 하나의 완전한 인간 생명이며 따라서 인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배아 대상 연구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원시선의 출현이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일 수 없으며, 인간 생명은 원시선 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수정 이후부터 진행되는 인간 생명의 발생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수정 이후에는 결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명확한 단절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배아 대상 연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¹²⁾ 제17조를 삭제하면,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마련된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조항도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

7. 체세포 복제배아와 관련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22조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를 통해 창출된 배아도 엄연히 인간 배아이다. 영양과 환경만 갖추어지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세포 복제 배아도 수정에 의해 발생한 배아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법률에서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체세포 복제 방법과 인간 복제 방법은 그 기술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체세포 복제 배아의 허용은 결국 인간 복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은 매우 크다. 또한 체세포 복제를 위해 필요한 난자를 획득하는 과정은 여성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수단화이다. 연구에 필요한 많은 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며, 이는 해당 여성의 건강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2004년 2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연구진의 체세포 복제배아 실험의 경우, 16명의 여성에게서 모두 242개의 난자가 채취되어 연구에 이용되었는데, 이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¹³⁾ 그러므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제3절은 삭제되어야 한다.

8.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4장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내용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제24조를 보면, 유전자검사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24조 1항). 이는 국가 기관의 유전자 검사 및 연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13) 홍석영. 인간 배아의 인격 지위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2002 ; 3(2) : 191-195, 진교훈, ibid.: 507-523, 구인회. 우리는 왜 초기 인간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Bio Wave 2005 ; 7(5) 등 참조.

13) 구영모,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 분석-생명과학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생명윤리 2004 ; 5(1) : 60-63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제25조 2항을 보면,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검사에서 유전 질환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치료 기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또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도 금지(제36조 2항)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낙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낙태는 낙태를 금지한 형법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배아나 태아의 전체성 보호를 전제로 한 건강 증진 및 치료 목적의 검사여야 한다. 전체성의 원칙에 따르면, 의료 행위 및 인간 생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해당 생명을 그의 전체성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일된 전체이며, 따라서 부분에 대한 개입은 항상 전체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⁴⁾ 따라서 배아 또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적 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9.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5장에서는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유전 정보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하에 유전자은행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 기관이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한 것(제32조)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 기관 역시 국민의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유전자은행 개설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0. 성체줄기세포연구 육성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8장 보칙에서는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그 획득 과정에서 생명을 죽이는 심각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성체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이 배아줄기세포에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¹⁵⁾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윤리 문제를 야기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금지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45조는 ‘성체줄기

14)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113-118

15) 오일환. 성체줄기세포와 미래 의학. 한국생명윤리학회 2002년 봄철학술대회. 『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3-20, 강경선. 생명윤리 논쟁 극복을 위한 대안: 성인줄기세포의 다양한 분화 능력과 그 한계. *ibid.* : 36-40

세포 연구를 우선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11. 벌칙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법 제9장은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에서는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체세포 복제배아 생성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단 이 법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어 미수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1조 3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 부칙의 문제점

이 법의 부칙에는 문제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인간 복제의 금지 및 이종간의 착상 등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법률 전체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에나 시행되었다. 법률의 시행 시기가 왜 이렇게 늦추어졌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진행 중이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한 연구진이 체세포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 학술지에 발표된 시기가 2004년 2월이며, 이 연구는 2003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법의 입법, 공포, 전면 시행 시기를 연구 속도에 맞추어 조절했다는 의혹이 든다.

부칙에서 더욱 문제되는 조항은 잔여배아 연구 및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경과 조치이다. 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 조치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되었고, 생성 후 5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생성된 배아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종의 소급 입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시행 전’을 ‘공포 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 공포와 함께 잔여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므로, 법 시행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도적으로 많은 잔여배아를 생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경우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동의를 면제했는데, 이는 이 법 제5조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잔여배아는 연구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체세포 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면, 3년 이상 이 연구를 계속 하였으며,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이 연구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이 법 시행 전부터 한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이 법이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과 조치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법은 본래의 입법 요구와는 달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 체세포 핵이식 및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이종간 교잡 등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인간 생명의 존엄성 훼손을 법률로 허용·인정해주는 악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그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법률의 목적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울어 있다. 생명과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 생명 존엄성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이 인간 생명 존엄성 실현에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의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법률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색인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간 복제 금지, 배아의 생성 및 연구, 성체줄기세포

A Critical Analysis of the 'Bioethics & Biosafety Act'

KIM Joong-Ho*, KU In-Hoe*, HONG Suk-Young**,
KOO Young-Mo**, LEE Kyung-Sang***

We critically examine the 'Bioethics & Biosafety Act'(Act No. 7150), gone into effect in January 2005, and propose the directions to be considered for the amendment of this Act. This Act is the first comprehensive law in bioethics in Korea. But this Act has serious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dignity of human life.

1. The legislation of this Act was in such a hurry that it failed to offer sufficient time for debating controversial issues.

2. The purpose of the Act, 'creating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is inappropriate. The purpose of the Act must guarantee and protect the human dignity in life science, instead

3. With regard to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ere are problems of composition. The number of government minister should be reduced.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come from the outside of the government.

4. Concern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total number of non-medical/scientific members and external members should count at least one-fifth of the entire committee.

5. The ban on human cloning should read to include the prohibition on the somatic cell nucleus transfer.

6. The ban on the transfer of embryos between different species should include the ban on the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nucleus to a an animal egg from which nucleus was removed.

* Catholic Institute of Bioeth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 College of The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7. 'Embryo Production Research'(Chapter 3) should be completely amended or eliminated. Because human embryo is not a mere cell but an early stage of human life, the research destroying human embryo should to be banned.

8. Some articles related to 'DNA testing', 'Protection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and 'Punishment' need to be specified or amended.

9. We propose the article on 'Support for Adult Stem Cell Research' to be amended: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ioritize financial support for adult stem cell research.' 10. The interim measures on remaining embryo research and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listed in 'Additional Provisions' should to be deleted.

Key words : Bioethics & Bio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ban on human cloning, Embryo Production Research, Support for Adult Stem Cell Research

* Catholic Institute of Bioeth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 College of The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